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고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16호)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6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개 요	1
II. 검토의견	4
1. 금고 지정 관련 제도 개선	4
2. 금고 관리 규정 신설	12

I. 개 요

【한병도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0. 10.

다. 회 부 일 : 2025. 10. 13.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신정훈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1. 6.

다. 회 부 일 : 2025. 11. 7.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 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
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
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금고 지정 관련 제도 개선(한병도·신정훈의원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지정하도록 하면서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금고 지정 또는 변경 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한병도의원안	신정훈의원안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으로 금고 업무의 취급 능력,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금금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20을

② -----

-----지정, 변경, 약정이율-----

-----.

③・④ (생략)	<u>초과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금고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주민의 이용 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

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위임하고 있음¹⁾.

이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금고지정 시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²⁾,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세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⁴⁾.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금고지정방법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또한,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약정기간, 경영지표,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등⁵⁾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약정 금리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공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⁶⁾.

한병도의원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된 금고 지정 방식 및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예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20% 이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5% 이하)의 상하한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⁷⁾.

또한, 신정훈의원안은 금고지정·변경 시 공개 대상 중 현행 「지방

4)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금고약정의 공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7) 현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예금금리’의 배점기준은 17점이며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의 배점기준은 2점임

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약정 금리”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지정 방식	내용	경쟁입찰 원칙 (예외 : 수의계약)	(현행과 같음)	한병도 의원안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법률	
지정 세부기준	내용	금고업무 취급능력, 금융기관 재무구조, 지자체 대상 예금금리 등	(현행과 같음)	
	배점 비율	지자체 대상 예금금리 17%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2%	지자체 대상 예금금리 20% 초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5% 미만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법률	
지정·변경 시 공개 대상	법률	지정, 변경, 그밖에 중요한 사항	지정, 변경, 약정이율 , 그밖에 중요한 사항	신정훈 의원안
	시행령	약정기간, 경영지표, 금고 변경 사유, 약정 금리 등	(현행과 같음)	

개정안들은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한병도의원안은 금고 지정 세부기준의 배점비율의 상·하한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병도의원안에 대해 법적 효과 제고를 위해 금고 지정 방식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금고선정 기준 및 일부 선정기준(예금금리, 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 상·하한을 법률로 정하면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시장 변화 등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신정훈의원안에 대해서는 2025.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약정 이자율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상 세부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u>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u>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17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8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22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u>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u>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u>녹색금융 이행실적</u> * <u>탄소중립 기여도</u> * <u>주민 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u>	11	

2. 금고 관리 규정 신설(한병도의원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 및 이자 수입을 공개하고,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⁸⁾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한병도의원안
<신설>	제38조의2(금고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가 출연한 사업협력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금고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8) 개정안의 사업협력비는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입찰 시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인 “협력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하에서는 이를 협력사업비로 지칭함. (출처 : 경인종합일보,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금고 협력사업비 수도권 최하위… 협상력 발휘해야”“, 2024.9.8.)

협력사업비는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고자 제시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이를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협력사업비의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¹⁰⁾.

그런데, 최근 은행들 간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출혈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세입 예산뿐만 아니라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예금 평균 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9)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금고약정의 공개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11) 해럴드경제, “지자체 ‘금고지기’ 협력사업비 출혈경쟁에 은행들도 ‘속앓이’”, 2025.10.29.

현행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항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및 금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현재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서의 “세입 결산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으나¹²⁾, 이를 별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사업협력비(협력사업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또한 협력사업비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률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협력사업비를 현재 세입예산 외에 세출예산으로도 편성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특정 사업에 활용해야 하는데¹³⁾,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2)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2. 세입·세출 결산

13)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

금고가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특정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탄력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결산서에 기 공개 중이며, 협력사업비 재원으로 편성하는 세출예산을 특정하여 편성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또한, 은행 간 협력사업비 출연 과다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 제한’, ‘은행평가 시 순위 간 점수편차 타 항목의 1/2로 제한’, ‘전년 대비 출연규모 20% 이상 증액 등 과다한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등 세부기준을 규정¹⁵⁾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14) 그 외에 금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은 수용한다는 입장임.

15)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를 적용함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문 의 처

02)6788-5337

-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②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 ※ <협력사업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주요 개정 연혁>
- 2019. 5. 9.개정,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4→2점)
 - 2014. 3. 7.개정,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예산편성, 공개 의무화